

제 575 호
1976. 9. 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8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66 호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	3
◎ 고 시	
제 249 호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	26
제 250 호 : 도시계획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및지적승인..	26
제 251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변경지적승인	27
◎ 공 고	
제 226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 공고	28
제 227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8
제 228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	37
제 230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일부변경지정공고	35
제 354 호 (영등포구공고) 공인신조 및 분실공고	35
◎ 사 명	36
◎ 정 정	3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92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6년 9월 27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066 호

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외용소방대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63 조제 2 항, 제 65 조제 2 항, 제 6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대원의 정원, 임용, 훈련, 검열, 복제, 복무, 보수 및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①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② 서울특별시상 (이하 「 시장 」 이라 한다) 은 의용소방대 산하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명칭) ① 의용소방대 (이하 「 대 」 라 한다) 의 명칭은 「 의용소방대 」 앞에 당해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소방서의 명칭을 붙인다.

② 의용소방지대 (이하 「 지대 」 라 한다) 의 명칭은 당해의용소방대 지대라 칭하되 지대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제 1, 제 2 등 순위를 붙인다.

제 4 조 (대의 기) 대의 기는 별표 1에 의한 제식의 기를 사용한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 5 조 (임용기준) 대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 지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조직) ① 대에는 대장 1 명, 부대장 1 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

원을 둔다.

②지대에는 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제 7 조 (대장등의 임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지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대의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8 조 (업무분장) ①대 또는 지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 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방반, 구호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 훈련반을 두며, 부반장 업무분장은 별표 2 와 같다.

②소방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부반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부와 반의 정원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조 (대외 정원) 대별정원은

50 명으로 하며, 지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대별 인원은 20 명내외로 한다.

제 3 장 임 용

제 10 조 (대원의 임용) ①대장, 부대장 및 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②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 11 조 (결격사유) 지방소방공무원법 제 10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 12 조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때

2.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때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소방에 관한 비행이 있을 때

제 13 조 (대원의 신분증명) ① 소방서장은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복무및 교육훈련

제 14 조 (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② 소방법 제 5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금지행위) 대원은 대의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단체경의 및 업무와 관계없는 집단적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 16 조 (복제) ① 대원의 복제는 별표 3 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의 복제는 시 예산으로 조제하여 대원에게 대여한다.

제 17 조 (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 18 조 (검열)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년 1 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교육 및 훈련) 대장은 소방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 회 4 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경비, 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제 20 조 (대의경비) 대원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에 편성한다.

제 21 조 (출동수당) ①대원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거나 타 대의 대원이 용원 출동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수당은 1인 1회 300 원으로 한다.

제 22 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제 23 조 (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비를 하게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

②제 1 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류 1호 봉의 봉급액 5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장해보상) ①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 1 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별표 4 및 별표 5 와 같다.

③별표 4 에 계기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p>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p> <p>제 25 조 (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에 장제를 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5급을류 1호봉의 봉급월액 12월분을 지급한다.</p> <p>제 26 조 (재해보상청구) ① 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제 2 호서식 내지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제 2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p>	<p>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외용소방대원 보수조례와 서울특별시 외용소방대원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p> <p>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④ (잠정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하던 대외기, 신분증명 및 복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 발급 또는 개여할 때까지 유효하다.</p>
--	---

<별표 1>

의용소방대기(도안)

(계)

90cm

64cm

36cm

남색

○○ 의용소방대

1. 기공은 은색 도금한 금속재로서 3각유봉으로 한다.
2. 기폭은 가로 90 센치미터, 세로 64 센치미터
3. 자질은 2종 면직 또는 후랏드지
4. 색 : 감 색
5. 휘장 : 기 중앙에 의용소방대 모평형과 동일한 휘장을 배열한다. 다만, 비둘기는 황색으로 한다.
6. 깃 : 황색면사 교연 (1 센치미터)
7. 술 : 황색 면선사 교연 (12 센치미터)
8. 기대 : 길이 150 센치미터 흑색칠
9. 대명 : 기면상부는 자외방 약 8 센치미터 크기의 소속 시.군명을, 기면하부는 자외 약 6 센치미터 크기의 대명을 좌로부터 배열한다. 다만, 문자의 간격은 기면을 중심으로 보기 좋게 표시한다.

(별표 2)

의 용 소 방 대 업 무 분 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차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급반	1. 대의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소방반	1. 화재의 경지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수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호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저봉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별표 3)

부 재 (표 지 장)

구 분			부 가 이 상	반장이 하	도 형	
표	계	정	지질	금 색 금 속 지	은색금속지	별도 1 (가) 계급장 (1)대장의 것 (2)부대장 및 지대장의 것 (3)부장의 것 (4)반장의 것
			계	1. 대장의 것 1번 1.7센치미터의 능형속에 #소#지 4개를 0.2센치미터의 간격으로 한줄로 배열한다. 2. 부대장 및 지대장의 것 위와 같은 것 3개를 0.2센치미터 간격으로 배열한다. 3. 부장의 것 위와 같은 것 2개로 한다.	1. 반장의 것 대장의 것 과 같은 것 1개로 한다. 2. 대원 해당없음.	
지	급	장	식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양 장	지 질	정장과 같이 한다.	(+)금 장	
		계 식	각급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를 당해 정장의 3분의 2로 한다.		
	금 장	지 질	금색금속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계 식	세로 1.3 센치미터 가로 2.5 센치미터 크기 단형으로서 우편에 구, 시, 읍, 면명 좌편에 '의소' 의 문지를 횡서로 양각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모	정 모	지 질	1. 카 바 동모는 흑감색모구렛까지 하모는 취색비니루지 2. 전비와 턱끈은 흑색비니루지 3. 자바라는 흑색 전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2 소방모 (가)정보
		계 식	1. 모자의 천점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철사물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테의 주위 외면에는 넓이 4 센치미터의 자바라를 두루고 외면에는 비니루 앞받이틀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모자테의 전반부에 턱끈만 두른다.	

구 분	부 장 이 상	부 장 이 하	도 형	
소 방		3. 모자택의 전반부에는 금색 금속사로만 넓이 1.2센치미터의 마로만둔 턱끈신 금선을, 후반부에는 넓이 1.5센치미터의 턱끈을 두루고 양끝에 귀단추를 한다. 4. 견비는 반원형으로 한다.		(나) 작업모
	지질	국방색 나이론직지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계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모	방 지질	흑색 또는 다색포 합성화이버지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다) 방수모
	모 계식	원형으로 외면과 내면을 포지합성화이버지로 한다.		
모 장	정 지질	바람은 흑색나사지 자수 부분은 금색 금속지	금색금속지	(라) 모장
	장 계식	직경 4.5센치미터의 무궁화잎에까인 무궁화 6개 (과무자 3개)로된 원형중앙에높이 1.5센치미터의 능형속에 관창 4개를 교차시킨 모양을 베치하고 그외부에 넓이 8센치미터 높이 2.2센치미터의 날개를 편 비둘기모양을 자주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같이 한다. 다만, 주조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약 장	지질	정상과 같이 한다.	정상과같이한다.		
	제석	정상과같이 한다. 다만 크기는 정상 의 3분의2로 한다.	부장이상의것 과같이한다.		
(재 복)					
구 분		부 장 이 상	반장이하	도 형	
계 의 부	정 상 의 적	지질	동북은 흑갈색 모구레 마 또는 라사 사지, 한북은 쥐색, 모포라 또는 라 사지	부장이상의것 과같이한다.	
		제석	1. 벌립것에 전면중앙계 한줄 4개 외단추를 단다. 2. 동판은 중앙융합선 하단을 절개 한다. 3. 흉부와복부 각 좌우에 동북은 속불 임, 하북은 절불임의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를 단다. 4. 어깨에 전장지물붙이고 전장단추 를 단다. 5. 하북은 뒤희리부분에 넓이 5센치 미터의 머붙 붙인다.	부장이상의것 과같이한다. 다만, 동북은 적음것으로 하고 한줄 5 개의 단추를 단다.	별도 3 계복 (가)동정복 상의 (1)부장이상 (2)반장이하 (4)하정복 상의 (1)전면 (2)배면
부 의 식	하 의 식	지 질	상의와 같이한다.	부장이상의것 과같이한다.	
		제 석	1. 긴바지로한다. 2. 전면우측에 옆으로 속불임작은주 머니와 좌우측면에 각각길기로 속 불임주머니를 1개씩 붙인다.	부장이상의것 과같이한다.	

구 분		부 장 이 상		부 장 이 하 도 명	
작업부의	상	지	3. 후면 좌우에 각각 옆으로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대) 작업부 상의
		질	국방색 목면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제 식	1. 노타이식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2. 긴소매코 하고 흉부좌우에 걸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작업부의	하	지	상위와 같음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2) 하 의 1. 전면 2. 후면
		제 식	정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좌우와 후면 좌우에 걸붙임 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2) 하 의 1. 전면 2. 후면
		방 수 부	지 질	국방색 고무포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제 식	1. 길이는 뒷굽으로부터 약 2.5 센치미터 격하도록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관절로부터 3 센치미터 길게 한다. 3. 골멘지겨움깃에 흉부 및 배부에 방수고무지를 덧붙이고 전면 좌우에 걸붙임뚜껑주머니 를 붙인다. 4. 소매끝 내부에 약 10 센치 미터의 모직 소매줄림을 붙인다 5. 전면에 고무 단추 5개를 한줄로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한다.	

비 고

1. 정부 상의의 전면 중앙-단추의 배열 간격은 처하단 단추가 허리 띠박을 하부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 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 분 부 별	소 방 단 추			플 단 추		비 고
	대	중	소	중	소	
정 부		○				
작 업 부					○	
주 머 니 단 추 (정 부)			○			상 의
견 장 단 추			○			
모 자 단 추			○			
하 의 단 추					○	

(소 방 화)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단	지	질	흑색복수지 (피혁)		부		장이		번	도
		계	식	무장식단화로 한다.		부		장이			
방	방	지	질	천면 및 합성고무, 범포지, 메리야스지 및 철판		·				(내)	방
		계	식	1. 길이는 약 85 센치미터로 대퇴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손은 철판을 넣으며 3. 상부로부터 약 50 센치미터는 메리야스지에 고무틀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 4. 상단의측에 요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난다.		·					
부	속	물		1. 박칼은 금색 금속지 2. 띠는 동부는 흑색, 하부는 쥐색 목면지		부		장이		(내)	터
				1. 박 칼 세로 3.7 센치미터 가로 5.3 센치미터 군용 부라스 박칼로 한다. 2. 벨 트 너비 3.2 센치미터 두께 0.9 센치미터의 적당한 길이로 하고 밑에 1.5 센치미터의 철판을 안밖으로 붙인다.							

(부 속 · 불)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 속 불	베타이	지질	동북용은 흑색, 하북용은 귀색 모직지	해당없음.	
		제식	일반 보통 베타이와 같이 한다.		해당없음.
	단 추	지질	금색 금속지	부장이상과 같 이한다.	별표 5 (가)단추
		제식	1. 직경 2.3 센치미터 (소형 1.5 센치미터) 높이 0.75 센치미터의 반구형으로 가장자리 둘 넓이 0.2 센치미터 (소형 0.1 센치미 터)의 로프형으로 하고 그안 에 '소'자 한글표를 배치 한다. 2. 저면의 중앙에 직경 0.25 센치미터 (소형 0.2 센치미터) 의 고리를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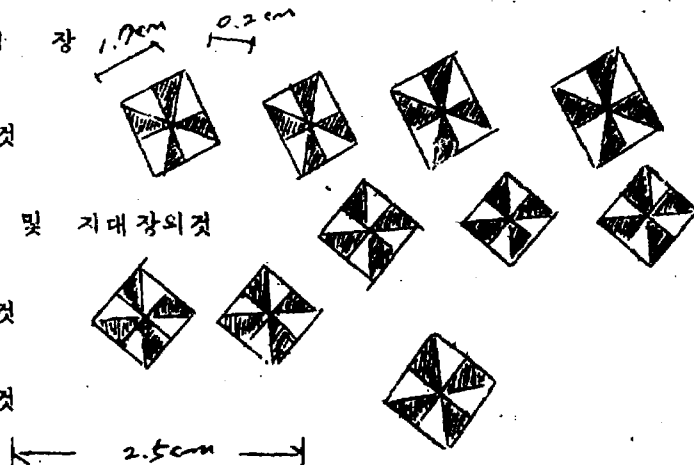
별도 1 표 자 장
(가) 계 급 장

(1) 대장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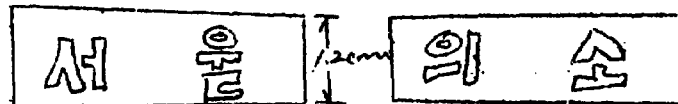
(2) 부대장 및 지대장의것

(3) 부장의것

(4) 반장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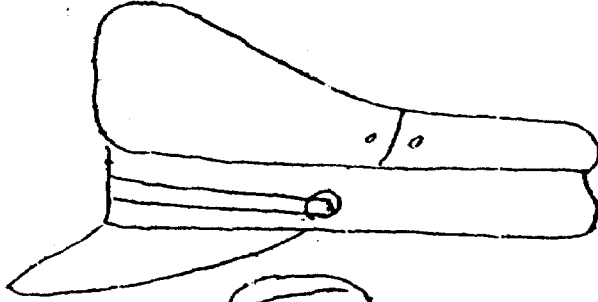


(나) 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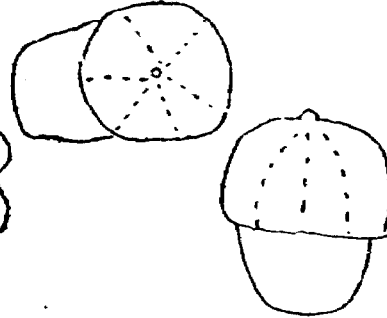


<별표 2> 소방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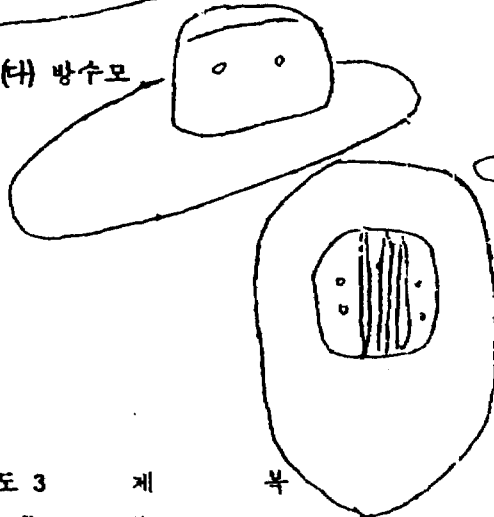
(가) 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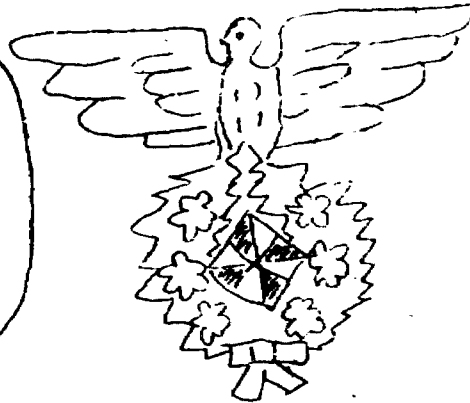
(나) 작업 모



(다) 방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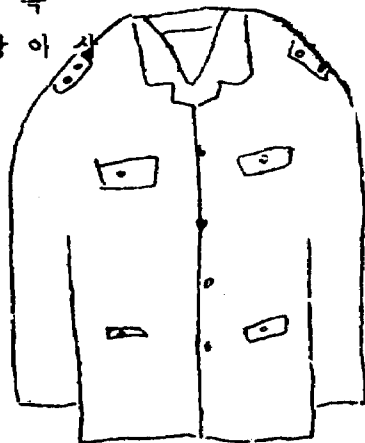


(라) 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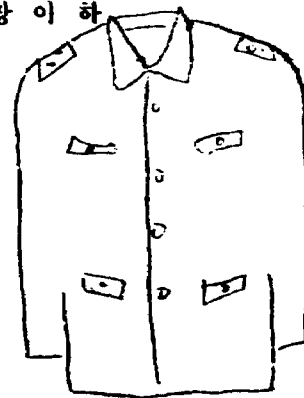


별도 3 계 부
(가) 동 전 복

(개) 부 장 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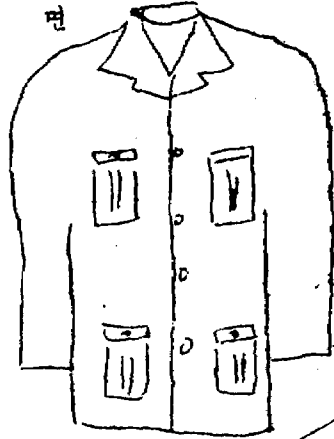


(2) 반 장 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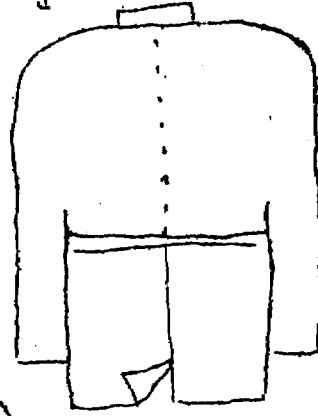


(나) 하 정 복

(1)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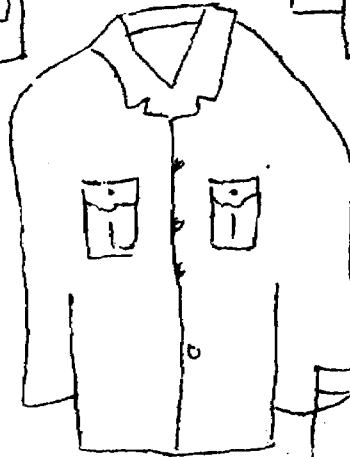


(2)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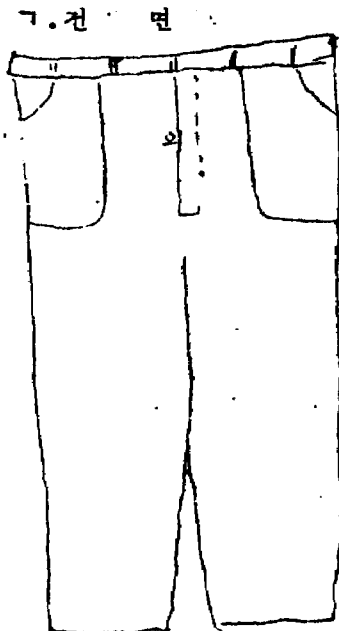


(다) 작업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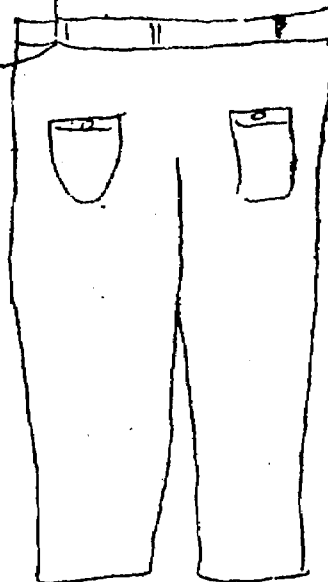
(1) 상 의



(2) 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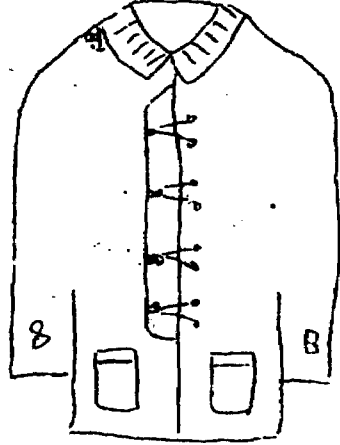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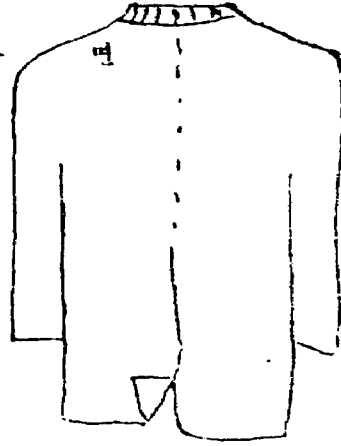


한 방 수복

(1)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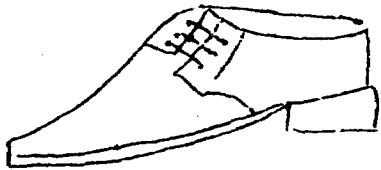
(2)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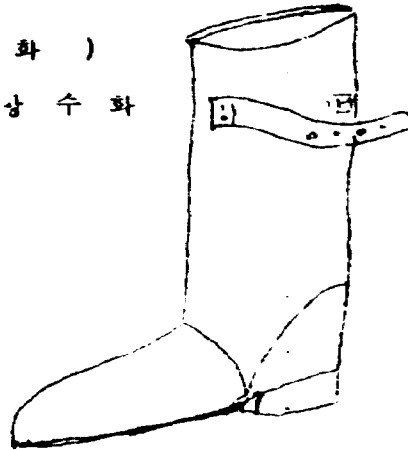
별도 4.

(소 방 화)

개 단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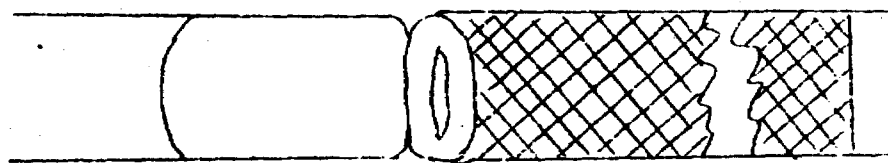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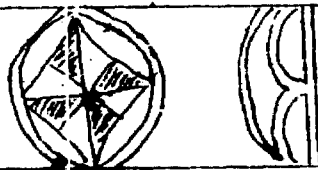
(한 방 수화)



별도 5.

(부 속 물)

개 단 추



(별표 4)

신 체 장애 등급 표

등급	신 체 장애
1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양상지의 완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3. 양하지의 족관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5.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과 편하지의 족관절이상이 함께 절단된 자 6.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산토목취업능력을 잃은자
2	1. 편안 실명된 자 또는 양안의 조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편상지중 완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3. 편하지중 족관절 이상이 절단된 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5.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기한 장애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기한 장애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3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2. 외기도에 기능에 기한 장애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또는 용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3.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의 장애를 받은것이 현저한 자. 5. 양모지 혹은 수지중 5지 이상을 잃은 자 6.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잃은자.
4	전 각등급 이외의 신체 장애자

(별표 5)
 신채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

등 급	제 2 급 ; 등급 월액의 9 월 분
제 1 급 ; 등급 월액의 10 월 분	제 3 급 ; 등급 월액의 8 월 분
	제 4 급 ; 등급 월액의 1 월 분

(별지 제 1 호 서식)

신 분 증 명 서

(앞 면)

2.3 센치 미터 3 센 치 미 터

사 진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외	계 호 용 시 시 군 도 소 방 대 ○ ○ 소 방 대 직 위	방
소		방

3.5 센치 미터
4 센 치 미 터

(뒷 면)

의 용 소 방 대 원 증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수 민 등 록 번 호
혈 액 형

197 . . .

발 행 관 인

7.5 센치 미터

<별지제 3 호서식>

요 양 보 상 청 구 서

1. 소속 (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또는 진료소 명칭

직 성명

1. 부상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 방 서 장

인

위와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서울특별시 장

귀 하

<별지제 4호서식>

장 해 보 상 청 구 서

1. 소 속 (주소)

2.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 병 명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5. 장 해 의 정 도

위의 사실과 상 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 명칭

지 및 성명

1. 장 해 발생년월일

2. 장 해 명

3. 청구금액 및 장 해 등급

위의 사실과 상 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소 방 서 장

㉑

위의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 구 자 주 소

 성 명

㉒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49 호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01호 (76.1.20) 로 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 및 제 2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하여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고양군청 건설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9.2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 산 80-3 외 34필
2. 사업의종류및 명칭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한국고압벽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규 섭

4. 시행면적 : 74,256 평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76.9
준공 : 76.12.30.

6.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번, 지목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8. 허가내용 : 별첨허가도서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도시계획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동법제 13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76. 9. 29.
서울특별시장

가. 결 정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선교 사 주택단지)	영등포구 등촌동 산 84 - 4 외 2 필지	10,106 ㎡ (3,057평)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은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1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부
변경 지적 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139 호 (76.8.26)
로 일부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 (공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
시 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일
부 변경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6. 9. 29.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 고시 내역

구분	공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현충공원	관악구 동작동일대	1,247,000	증 1,214,400	2,461,400
	상도공원	관악구 동작, 흑석, 사당일부	1,209,618	감 969,600	240,018

※ 도면은 서울시청과 관할구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5 호 (76.9.3)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에 의거 환지 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34 조 및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지정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양서출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조소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1976. 9. 25.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27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청산금 납부고지서를 각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명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8 조 제 3 항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6. 9.

서울특별시 장

1. 주소 또는 거소 상명 : 울지로 3가 308-5 김재극외 86명 별첨조서
2. 구분 : 청산금 납입고지서 76년도 수기분
 - 가. 납부장소 : 당시 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
 - 나. 납부기간 : 76. 10. 10

망 우 3 차 채 납 자 조 서

수 납 번호	물 건 지			과도청	청 산 금 채 납 액	납 부 자	
	동	지 번	면 수			주 소	성 명
1	중 화	297 - 4	322.20	5.20	139,817	을지로 3 가 300-5	김 재 주
25	"	297-39,44	67.10	5.20	119,345	중화동 247 - 24	김 태 중
42	"	298 - 5	168.20	9.40	225,684	" 246 - 23	박 순 복
52	"	298 - 18	23.30	4.70	109,035	" 429 - 11	최 종 필
186	"	321 - 64	16	0.10	3,160	" 225 - 4	미 능 기
187	"	326 - 66	36.30	0.70	22,121	" 225 - 5	장 세 창
190	"	321 - 85	78.40	4.40	141,081	" 398 - 11	김 작 건
242	"	322-106,131	155.10	4.90	154,559	황 학 동 3	미 능 기
255	"	323 - 12	38.30	1.30	44,996	경 화 동 401 - 83	김 순 옥
287	"	323 - 83	41.10	1.10	35,251	휘 경 동 116	박 광 용
311	"	324 - 16	52.70	1.70	45,010	중 화 동 417 - 7	여 순 오
387	"	324 - 140	38.40	0.10	23,192	" 418 - 21	진 영 순
398	"	318 - 17	20.50	1	29,545	면 목 동 359	김 석 중 외 2인
427	"	318 - 80	30.80	14	522,578		미 능 기
428-1	"	318 - 81	36.50	0.10	3,989		"
518	"	326 - 114	65.30	0.30	22,051		"
538-1	"	325- 6,7	48.80	1.00	48,771	면 목 동 430- 31	김 종 기
543	"	325 - 17	17.40	0.10	12,193	중 화 동 408 - 48	노 양 기
555	"	325 - 35	133.60	0.20	7,295	" 131 - 28	박 회 성
586	"	296 - 46	261.80	5.30	341,000	상 봉 347 - 3	최 인 식

수납 번호	물		지 면 수	과도평	청 산 금 액	납 부 자	
	동	지 번				주 소	성 명
588	중 화	296 - 53	36.40	2.20	82,973	중 화 동	미 능 기
644	"	299 - 79	14.10	0.10	3,576		김 재 국
710	"	316 - 19	45.50	0.90	1,766	중 화 동 242-4	유 인 옥
807	"	327 - 74	125.20	13.10	414,759		미 능 기
845	"	328 - 36	16.80	0.10	2,490	중 화 동 403-9	이 한 기
856	"	328 - 62	133	2.90	165,486		미 능 기
882	"	301-27,37,42	82.40	0.40	16,414		"
913	"	302 - 1	81.40	0.60	49,512	중 화 동 290-13	고 근 영
920	"	302 - 15	38.60	0.60	24,867	" 254-7	강 영 설
975	"	315 - 8,9	40.50	2	78,058	" 395-7	정 명 운
993	"	315 - 48	46.90	2.30	87,774	신 설 동 116	김 수
1040	"	304 - 1	198.40	4.70	268,384	중 화 동 282-3	박 옥 산
1041	"	304 - 4	21	0.20	8,204	"	"
1081	"	312 - 12	87.60	2.50	98,355	중 화 동 282-53	김 복 순
1084	"	312 - 17	43.20	13.20	519,314	" 217-14	이 옥 순
1086	"	312 - 19	112.91	2.30	111,016	" 287 - 1	정 기 영
1138	"	312 - 108	78.30	9.70	388,630	" 296 - 47	김 효
1171	"	329 - 15	30.90	0.60	21,887	" 309 - 6	손 주 택
1176	"	329 - 21	38.90	0.30	11,218	" 309 - 13	
1215	"	329 - 159	6.30	0.10	3,663	"	미 능 기
1283	"	305 - 6	20	4	163,256	중 로 구 계 동 67-29	엄 익 용

수납 번호	물 전 지			과도명	청산금 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면 수			주 소	성 명
1295	중 화	305 - 36	45.10	0.10	4,186	중화동 282-2	박옥산
1319	"	306-24,26,65	7.30	0.10	4,075		미능기
1344	"	310 - 3	40.80	11.70	503,989	중화동 308 - 31	박병찬
1356	"	310 - 24	23.10	0.10	3,581	" 308 - 108	김인호
1459	"	308 - 1	28.70	0.90	31,865	" 308 - 1	김대홍
1490	"	331-102,82	512.40	1.40	80,647	" 305 - 5	이샤용
1492	"	331-104	34.50	21.10	674,567		미능기
1494	"	331-110	31.10	10.50	491,169		"
1539	"	308 - 9	60.40	0.30	11,749	중화동 329 - 37	김수영
1634	"	332 - 7	86.90	0.30	11,141	북동 367 - 5	김진하외3인
1654	"	332 - 48	422.30	5.90	219,114	중화동 381 - 2	미능기
1668	"	332 - 88	44.90	24.30	1,276,212	중화 381 - 5	관상운
1669	"	332 - 89	48.60	14.30	682,754	" 381 - 4	박윤철
1675	북 동	북동 250-7	36.70	1.60	61,755	연화동 181-67	박경재
1734	"	248-4,5	419.40	8.30	353,173	북동 162 -	윤내식
1739	"	248 - 15	98.60	0.30	10,904	신설동 357 - 14	"
1764	"	248 - 67	27.60	16.20	752,572	중 화 342 - 17	윤재오
1766	"	248 - 69	26.07	15.30	714,541	" 342 - 20	김만소
1767	"	248 - 70	28	16.60	775,253	" 242 - 13	"
1768	"	248 - 73	28	12.70	591,464		미능기
1769	"	248 - 74	32.40	11.60	584,698	중화동 425	허
1845	"	247 - 11	56.10	0.30	9,887	북동 178-15	박광천
1869	"	247-84,88	49.10	9.70	492,867	중화동 247-8	정광근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평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1871	북동	247-89	29.50	10.60	483,996	중화동 342-	조철원
1872	"	247-90	113.60	1.	39,459		미등기
1873	"	247-95	47.10	0.90	30,351		"
1873	"	244.10	115.90	7.40	106,696	북 동 190-10	이금자
1980	"	243-27	72	2	84,258	북 동 187-5	김종권의1인
1984	"	243-34	34.40	0.70	25,073	" 174-15	김태
1992	"	243-53	32.70	0.30	10,246	" 174-21	김태
2009	"	243-96	84	4.90	175,219	" 168-22	김동섭의1인
2030	"	242-56	110.70	0.60	22,510	" 365-1	미등기
2031	"	242.59	30.20	0.20	6,754	" 180-15	"
2032	"	242-60	30.60	0.60	20,263	" 180-16	"
2083	"	242-61	30.40	0.40	13,509	" 180-17	"
2084	"	242-65	36.20	0.20	7,204	" 180-65	"
2089	중화	291-3	91.90	0.60	25,835	중화동 176	송수
2161	"	^{32.28} 286-25.27			114,164	한강로 1-311	서원주
2161	"	286-25.24	87.50	5.30	271,307		미등기
2163	"	286-29	145.90	2.60	181,521	삼선동 5가171	서원주
2229	"	275-33	48	1.60	60,592		미등기
2236	"	273-12	28.30	8.90	398,168	중화동 산2-2	박광우
2238-1	"	273-16	24.40	7.10	313,213		미등기
2263	"	274-65,27.30	168.20	17.30	687,363		"
2266	"	274-28	61.50	2.50	107,720	중화동 산2-15	백준부
2130-1	"	290-19,20			20,600	" 163-4	차중현

◎서울특별시공고제 228 호

청산금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각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명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8 조 제 3 항 및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76. 9. .

서울특별시장

1. 주소또는거소성명 : 중구남산동 2가 25-8 김정욱외 32명 별첨조서
2. 구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6년도 수기분
 - 가. 납부장소 : 당시도시정비국 도시행정과
 - 나. 납부기간 : 76.10.10. 끝.

제 납 자 조 서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액	청산금 제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32	사당	446 - 119	100	15.10	114,049	남산동 2가 25-8	김 정 욱
42	"	446 - 49 64	83.20	24.60	180,337	종암동 124-61	이 종 현
56	"	454 - 2	107.40	28.40	237,614	사당동 454-34	이 정 삼
65	"	454 - 11	124.60	15.10	122,518	하월곡동 81-43	이 전 중
77	"	484 - 30 29	72.80	4.90	83,368	세종로 81-6	한국예술단 제연합회
79	"	484 - 32	142	14.70	100,502	인현동 2가 181-54	조 규 욱
87	"	484 - 69 5	145.90	9.20	30,942	사당동 484-32	김 윤 식
88	"	산55- 6	977.90	245.50	1,671,337	이문동 256-159	최 경
96	"	454 - 36	119.80	33.20	253,620	신설동 154-23	미 등 기
107	"	454 - 51 483 - 8	98.60	15.20	120,588	상도동 331-103	이 영 천 용 준

수납 번호	물 건 지			과도명	청산금 채납액	납 부 자	
	동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109	사당	483 - 6	108.10	25.50	174,057	아현동 408	김 홍 수
114	"	484 - 5	111.30	19.60	133,674	당산동 4가 32-91	김 건
121	"	484 - 10 14	130.20	21.30	168,859	녹번동 120-1	강 영 롱
125	"	484 - 53	113.50	9.10	60,340	석촌동 662	왕 명 원
127	"	484 - 51	112.40	15.6	103,551	홍제동 287-133	장 민 호
128	"	484 - 50	117	15.10	100,478	건농동 46	김 병 식
134	"	434 - 44	110.90	22.60	149,283	강릉동 1가 96	김 재 명
146	"	484 - 19	93.60	12.90	88,080	경운동 66-3	고 영 숙
148	"	484 - 17	97.80	15.40	104,815	충북병원부용부강리 4-5	조 대 영
152	"	483 - 12 484 - 28	47	15.70	106,919	쌍림동 162	예 대 용
157	"	484 - 58	93.30	10.10	55,644	울지로 3가 176-1	최 영 순
159	"	484 - 60	125.80	61	40,011	서교동 326-12	김 규 배
160	"	454 - 54	89.10	9.90	80,009	푸암동 140-16	이 인 자
163	"	451 - 3	85.7	14.20	173,924	동교동 44-18	김 정 호
170	"	451 - 15	89.40	10.40	75,890	이촌동 302-70	현 동
172	"	449 - 43	112.50	20.80	154,436	청파동 3가 118-93	김 순 래
174	"	449 - 45	90.10	6.10	44,294	삼선동 4가 353	이 천 재
178	"	449 - 61	118.60	21	155,010	강릉동 2가 186-40	박 영 애
185	"	446 - 63 90 30	101.90	38.10	493,497	개봉동 33-9	박 성 모
186	"	448 - 2	173.70	13.70	100,795	사당동 448-2	허 철
189	"	산 56-2	480.90	6.90	47,196	국	
190	"	484 - 56	84.30	5.90	38,572	금호동 1가 165	이 외 한
173	"	442 - 44	91.10	4.50	32,629	청파동 3가 118-93	김 순 래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0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영동제2지구 및 제2지구추가 및 영동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제 192 호 (76.9.23)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 영동제 2 지구추가 및 영동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1 조 및 제 12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을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 완료일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3. 환지에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한다.

첨부 :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 : 별첨 (생략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1976.9.28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공고제 354 호

공인신조 및 분실공고

1. 1976.9.25 12:30분 영등포구 제1동장직인을 분실하였기 서울

특별시 공인조례 제 6조 2항 및 제 9조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가. 분실직인은 1976.9.25 12:30 이후 직인날인은 무효로 함.

나. 신조공인사용일 1976.9.27

09:00부터

1976. 9. 27

영등포구청장 김택수

영 등 포 구 제 1 동



사 령

◎ 1976.9.21

도시가스 지방행정 김 정 상
사 업 소 주 사 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6.

6.5 (발령제 353호) 징계처분

(감봉 6월) 을 동일자로 번

경 견책에 처함.

◎ 1976.9.23

서울특별시 이사 판 서 기 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서 기 석

서울특별시 이 상 운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1976.9.23~79.9.22)

◎ 1976.9.28

연 로 과 지방행정 최 락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6.9.29

양 묘 장 지방행정 염 수 운
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76.6.22자 발령제 391호

징계처분 (견책) 을 동일자

로 취소함.

죽 지 국 공원과장지대 피 상 진
농림기정에 임함.

죽지국공원과장에 포함.

종로구
보건소 소장직대 이 중 법
지방외무기정에 임함.
종로보건소장에 포함.

정 정

1976.9.27

서울특별시장

시보 제 573 호 (76.9.18) 에 게재

된 서울특별시훈령 제 458 호 서울
특별시도자보호시설운영규정중 아래와
같이 오·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
한다.

조 항	오 류 사 항	경 정 사 항
훈 령 제 목	서울특별시사실모자보호시설 운영규정	서울특별시사실모자보호시설운영 규정
제 3 조 제 2 항	자격적발여부	자격적합여부
제 7 조	제 3 조 이하의	제 5 조 이하의

서울특별시장